(15-016) ○○교 보수공사 중 공중비계 흔들림 및 붕괴로 근로자 추락사고

공사명	○○군 ○○면 일원 도로정비공사(2차)			
사고일시	2015년 10월 10일(토) 09:30분경		기상상태	비
소재지	경기도 양평군 회현리	사고 종류	추락	
구조물 손실	_	인적피해	부상 4명	
장비 손실	_	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	해당(),	해당없음(○)

Ⅱ 공사개요

- o 공사종류: 도로교량(보수공사)
- o 규모: 강재구조물 외부도장 884㎡

사고개요

2 사고경위

o 보수보강공사 작업을 위해 공중비계를 설치한 작업대가 흔들림 및 붕괴되면서 근로자 4명이 7m아래로 추락 3명이 부상.

③ 사고워인

o 비계 설치 불량.

o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· 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.

o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 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,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.

재발방지 대책

- o 비계 조립 전에 구조, 강도,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 하여야 하며,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
- o 비계 및 작업 발판은 공사의 종류, 규모,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.
- o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,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.
- o 작업 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, 최대 적재하중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.



사고현장 위치도



사고 사진

사고현장 전경



사고 사진

사고현장



사고 사진

사고현장